

## 技術士法案解說과 同施行令草案 作成을 위한 說問調査

A Bill of Professional Engineer Act interpretations and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text Stipulations  
of its decree

金 岫 根\*  
Kim, Suen Guen

### 목 차

1. 머리말
2. 技術士 法案解說
3. 이 法施行令 草案作成을 위한 設問調査

#### 1. 머리말

지난 86年 金慶植會長(現顧問)在任時 當時 常任理事 金安基氏(美移民)의 周旋으로 「國家 技術士法作成研究用役」을 始作으로 現在까지 立法特委幹事까지 하면서 立法推進의 一人으로서 感懷가 남달리 깊은 것은 滿 6年만에 國會經過委까지 當會立法案이 여러 修正 끝에 國會上程案으로 附送되 있다는 것이다.

其間 내가 좋아하는 數學工夫의 繼續은 中斷되고 法律工夫에 專念하게 되어 立法理論, 經濟行政法, 民法·商法, 仲裁法 等 本意아니게 技術士會를 위해 法律工學徒가 되고만 實情이다.

回顧하건대 舊技術士法은 當時 土木學會長이었던 作故하신 李鳳寅先生께서 主導하여 立法化되어 制定公布된 바 있었던 것이었으나, 지금처럼 難關없이 行政立法으로 不過 1年余

라는 短時間에 日本技術士法模倣으로 쉽게된 것이었다.

그런, 再立法하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8~6年 立法建議에서부터 金鎮炫現長官任이 行政立法하기까지 6年이 所要되었다.

그간 科技處 當局은 立法을 忌避하는 뜻 印象을 주었고, 每年初 開催되는 技術士會新年 賀禮會에서 當時의 3議員(李祥義·李應善·趙庚穆 長官사이의 對話를 直接 엿들었던 本人에게는 李某長官은 議員立法만 主張하고 있는 말투로 보아 行政立法이 매우 어렵다고 한바 있었다. 別添 그림-1과 같이 우리의 技術士 法律案은 當然히 行政立法이 되어야 順理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民主法治國家를 指向하는 오늘에 技術士會의 民主的輿論은 無視할 수 없게 된 것이다.

再次, 紙上으로나마 技術士法立法草案者의 一人으로서 技術士에게 希望의 烽火를 올림씩 聖火처럼 불부처 주신 金鎮炫長官님께 感謝의

\* 土木(港灣 및 海岸技術士), (社) 韓國技術士會常任理事(立法草案擔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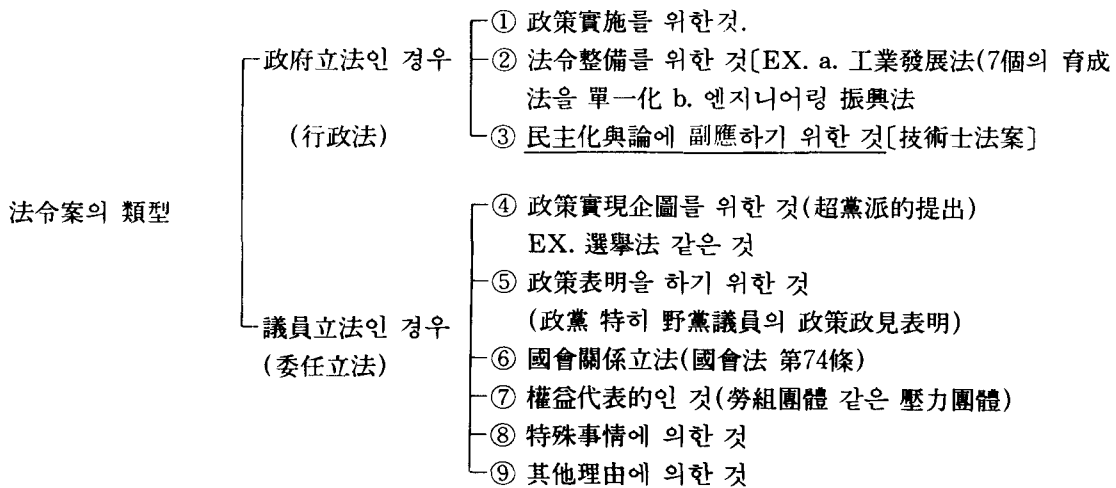


그림 1 法律案의 類型分類圖(SGK)

말씀을 올립니다.(行政立法推進이 ampi었으면 違憲訴訟을 提起할 準備가 實務者線에서는 다 되어 있었던 것이다.)

## 2. 技術士法(이 法)案解說

立法推進過程中에서 많은 修正과 部分 削除條文 및 條項이 생겼고, 이것을 科技處가 法制處에 提出한 最終案과 政府가 最終案으로서 國會에 提出한 法案間에 差가 있어서 이것을 표-1 처럼 技術士法案의 政府最終案과 科技處(92. 1. 5)案과의 法條文對照表에서 보다시피 큰 內容變動은 없으나 新設條項이 聽聞과 過怠料에 관한 2個條項이 늘어 났다는 點일 것이다. 이것을 條文別로 解說하고 이 法 施行令草案에 기하고저 한다.

(法律 第 號) 技術士法案과 그 解說 (國會經過委提出分)

第 1 條 (目 的)

이 法은 技術士의 職務遂行과 그 管理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産業技術分野\*에서

技術士의 活用을 獎勵하고, 나아가 科學技術 振興과 國民經濟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解說> 現實定法인 國家技術資格法의 第1條 (目的)에 없는 法條文, 즉 ① 技術士職務遂行規定 ② 技術士活用の 獎勵施策 (産業技術分野에서) 등이 法條化된 것이 特異하다.

- 國家技術資格法體制下에서는 技術士 職務의 開發·普及과 啓發이 未洽한 實情에 놓여 있다.
- 政府·公共機關에서 發注하는 技術士職務關聯事業에 技術士活용이 現在 法的·行政上으로 未洽한 實情을 勘案한데 있다. 따라서 이 [目的]에 의거하여 이 法 第5條(技術士活用施策)의 施策化를 法施行과 함께 持續的으로 關聯法規의 補完整備를 併行하면서 技術士活용의 獎勵를 통한 活用義務化를 促進하는데 있다.

(事例 1) 美國 New Jersey州 技術士法 第1條에는 모든 公共事業發注契約에 技術士(Licensed Engineers)와 測地士

<표 1>

技術士法案의 政府最終案과 科技處의 法條文對照表

科技處案(92. 1. 5)	政府最終案(法制處審議案 92. 7. 9)	備 考	
第1條(目的)	第1條(목적)	<立法日程要約> 1. 科技處立法豫告 : 91. 5.29~91. 6.22 2. 第20次 經濟長官會議議決 : 91.12.20 3. 法制處接受 : 92. 1. 5 4. 國會經科委接受 : 92. 7. 9	
第2條(意義)	第2條(定義)		
第3條(技術士의 職務)	第3條(技術士의 職務)		
第4條(誠實義務)	第4條(誠實義務)		明示條文을 더욱 間潔化함
第5條(技術士活用施策等)	第5條(技術士活用施策)		
第6條(技術士事務所의 開設)	第6條(技術士事務所의 開設登錄)		新設條項, 原案 第9條(技術士事務所의 登錄取消)을 改備補完한 것임
第7條(名稱使用의 禁止)	第7條(登錄拒否)		
第8條(表示行爲)	第8條(登錄事項 變更申告)		
第9條(技術士事務所의 登錄取消)	第9條(類似名稱의 使用編)		原案 第7條와 같다.
第10條(報告·檢事 등)	第10條(署名捺印)		原案 第8條와 같다.
第11條(技術士管理委員會)	第11條(登錄取消)		原案 第9條와는 條文明示事項이 다르니 原內容과 거의 같다.
第12條(韓國技術士會의 設立)	第12條(技術士의 管理에 관한 協議)		原案 第11條에 있었던 技術士管理委員會가 削除되어 主務部와 協議만 하게 되었다.
第13條(技術士會의 業務)	第13條(韓國技術士會의 設立)		原案 第12條와 같다.
第14條(技術士會의 監督등)	第14條(技術士會의 業務)		原案 第13條와 같다.
第15條(權限의 委任·委託)	第15條(技術士會의 監督)		原案 第14條와 같다.
第16條(罰則)	第16條(報告檢事등)		原案 第10條와 같다.
第17條(他法律과의 關係)	第17條(聽聞)		新設條項
第18條(施行令)	第18條(權限의 委託)		原案 第15條와 같다.
附 則	第19條(罰則)		原案 第16條와 같다.
第1條(施行令)	第20條(過怠料)		新設條項이고, 過怠料賦課가 條文明示가 되었다.
第2條(韓國技術士會에 대한 經過措置)	附 則		
	第1條(施行日)*		
	第2條(韓國技術士會에 관한 經過措置)	民法關聯 事項을 明示한다.	

\* 法律의 施行日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로 改正되어야 하고, 辯護士法, 辨理士法, 電氣工事業法, 韓國電力公社法, 農漁村電化促進法

<표 2>

國內實定法資格과 事務所開設法條項現況表(SGK)

No.	法 名	法號	制定公布日	法定資格用語	事務所開設法條項 및 內容
1	建築士法	1536	1963. 12. 16	建築士·建築士補	第23條(登錄) ②項: 單獨 및 綜合建築士事務所 單獨: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 以下의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 業務 綜合: 모든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業務
2	稅務士法	712	1966. 7. 15	公認會計士	第13條(事務所의 設置) ① 1個의 事務所만 設置할 수 있다. 第13條의 2(合同事務所의 設置) 3人 以上으로 合同事務所 或은 法人化할 수 있다.
3	公認會計士	1979	1966. 7. 15	公認會計士	第12條의 8(合同會計事務所의 設置) 公認會計士 10人 以上일 것 (本條新設 89. 12. 30) 第12條의 2(會計法人의 設立)(1968. 12. 31. 第4章의 新設)

4	關稅法	1976	1967. 11. 29	關稅士	第160條의 4(事務所의 設置) ① <u>1個에 限해 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u> (1978. 12. 5. 本條新設) 第158條의 2[關稅士法人] 關稅士 3人 以上일 것
5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 (建設部所管)	4120	1984. 4. 1	鑑定評價士 (土地評價士의 廢止代身에)	第18條(事務所開設登錄) ⑥ <u>鑑定評價士는 2 以上の 鑑定評價事務所를 設置할 수 없다.</u> 第19條(鑑定評價法人) ② 大統領令이 定하는 數 以上の 鑑定評價士인 社員으로 構成하되,……
6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財務部所管)	2663	1975. 12. 31	公認鑑定士	第6條(法人에 대한 鑑定業의 認可) ② 法人은 資本金 5億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數의 公認鑑定士를  고용하는 株式會社이어야 한다.
7	法務士法 (舊司法書士法)	4200	1990. 1. 13 (法改定)	法務士	第13條(事務所·合同事務所·所屬變更登錄) ② <u>法務士의 事務所는 1個所로 한다.</u> ⑤ 法務所는 그 職務를 組織的이고 專門的으로 行하기 위하여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경우에는 分事務所를 들 수 있다.
8	辨理士法	864	1961. 12. 23	辨理士	第6條의 2(事務所의 設置) ① <u>事務所設置는 1個에 限한다.</u> (1973. 2. 8. 本條新設)
9	公認勞務士法	3771	1984. 12. 31	公認勞務士 (開業勞務士)	第6條(事務所의 設置등) ② 事務所는 2個 以上 設置運營할 수 없다. 第7條(合同事務所) ① <u>3人 以上으로 構成되는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u>
10	公證人法	723	1961. 9. 23	公證人	第7條(事務所) ①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③ 合同事務所의 設置 및 運營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1974. 12. 21. 本項新設)
11	辯護士法	3594	1982. 12. 31 (法改正)	辯護士	第17條(法律事務所) ② 法律事務所는 所屬地方辯護士會의 地域 안에 두어야 한다. ③ <u>2 以上の 法律事務所를 들 수 없다.</u> 第30條(法務法人의 設立)……法務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12	不動産仲介業法	3676	1983. 12. 30	公認仲介社	第10條(二重許可의 禁止) 仲介業者는 二重으로 仲介業의 許可를  받아 仲介業을 할 수 없다. 第11條(營業所의 設置등) ① 仲介業者는 그 許可區廳의 管轄區域 안에 營業所를 두되, <u>2個 以上の 營業所를 들 수 없다.</u>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産仲介業을 할 수 있는 特殊法人이 許可官廳의 許可를  받아 營業所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urveyor)의 活用義務條項이 있다.

(事例 2) 日本技術士會發刊(90. 2) “技術士制度” 15面に (3) “技術士資格의 公的 活用促進事業” ⑥ 普及啓發事業等이 記述된 바와 같이 日本도 技術士의 活用이 未洽하기에 위와 같은 事業이 持續推進되고 있는 實情이니 우리는

이에 比할 바가 못된다.

#### 第 2 條 (定 義)

이 法에서 “技術士”라 함은 해당 技術分野에 관한 高度의 專門知識과 實務經驗에 입각한 應用能力을 보유한 者로서 國家技術資格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를 말한다.

〈解説〉 技術士라는 法定用語가 定義化되므로써 法定資格者의 定義가 現實定法인 國家技術資格法의 第2條(定義)를 補完支柱하게 될 것이다.(參考로 摘記하던대 國家技術資格法에는 技術士의 分類만 있고 무슨 일을 하는 者인지 條文上의 明記가 되어 있지 않다.

### 第 3 條 (技術士의 職務)

① 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研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監理·評價·診斷·사업관리·技術判斷·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② 技術士의 職務에 관한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③ 第1項에 規定된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解説〉 위 第3條 ①項의 計劃……技術仲裁等 13個에 職務中 主要한 것은 施行令에 具體적이고 또 細部事項까지 法條文化가 絶對 必要한 것이다. 例컨대, 技術仲裁의 定義, 技術仲裁規程(仲裁法에 의거한), 技術仲裁의 補修教育, 技術仲裁 機構 같은 것 등이 될 것이다.

위 ③項에 關하여는 技術士의 資格種目的 分類는 施行令에서 條文化하여야 하면, 이에 對한 設問調査가 技術士會誌(92. 8月號)에 掲載되었으니 會員의 關心事가 되어 주시기를 希望한다.

더우기 이 法 第5條의 施行令에는 技術士의 活用施策上의 具體화된 條文化를 立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銘記해야 할 重要한 것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거하여 國家가 그 專門技術資格은 保證하였는데 이에 比例해서 技術士職務遂行上에 必要한 技術士 個人 信用保證이 等閑視되어 있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責任保證保險\* 같은

것을 한 法人體(例, 共濟會 같은)가 保證하는 制度化가 時急하다.

當初 技術士會案과 科技處立法豫告案에 있던 「技術士共濟組合」條項이 削除된 理由를 알 수가 없다. 그리하여 不得已, 實定法을 活用하는 立場에서 이 法 第5條을 근거로 施行令案 第36條(技術士信用金庫의 出資 등)을 立法推進하게 된 것이다. 施行令案에 反映키 위해 各會員이 意見을 收斂하여야 할 對象條項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특히 技術士職務의 改善과 發展을 위한 施策의 明記化가 있어야 될 것이다.

※ 美國에서는 判事도 判決失手를 犯했을 때의 責任을 지는 保險制度가 新設된지 數年이지났다.

### 第 4 條 (誠實義務)

技術士는 誠실히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以下, 削除된 條文은; 技術能力의 向上을 爲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解説〉 이 條項은 舊技術士法 第24條, 國家技術資格法 第11條, 建築士法 第20條 등 其他 30余個에 이르는 法定資格法에 必須的으로 條文化되는 慣例條文이다.

### 第 5 條 (技術士 活用施策)

① 政府는 技術士의 專門技術知識이 産業技術發展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內容이 包含된 技術士 活用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1. 技術士의 長·短期 需給展望 및 計劃
2. 技術士의 活用을 獎勵하기 爲한 施策
3. 技術士의 育성과 技術能力 向上을 爲한 施策
4. 其他 技術士職務의 發展을 爲하여 必要한 施策

② 第1項의 規定에 關한 技術士活用\* 施策의 樹立 및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參考事項: 舊技術士法 第25條(技術士의 活用)

① 科學技術處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

\*追加補完된 條文이다.

하는 事業 중 專門的인 技術을 必要로 하는 事務를 指定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事業을 營爲하는 者에게 技術士의 活用을 命할 수 있다……

1. 國家·公共團體 및 政府管理企業體가 營爲하는 重要한 事業
2. 長期經濟開發事業
3. 外資導入事業中 重要한 事業
4. 其他 特히 重要한 公益事業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以下 省略)

〈註釋〉 1960年代의 우리 經濟社會環境과 1990年代에 突入하여 2000年代를 바라보는 前向的·合理化方向을 長期的 眼目으로 보는 立法條文化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解說〉 國家技術資格法 第10條[技術資格取得者에 대한 優待에는 ① 就業保障 ② 政府나 地方自治團體가 營業의 許可·認可에 優待措置 ③ 技術資格取得者에 대하여 事業主가 優待措置하는 等の 條文化에 그치고 있다.

實地로 이 優待條項은 있으나 마나한 條項으로서 지난 77年 7月부터 認定技術士制에서 1984年 12月부터 高級技術者라는 非法定用語로 變身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優待 아닌 賤待를 받아 오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 條項으로는 技術士活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第 6 條 (技術士事務所의 開設登錄 등)

- ① 技術士事務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技術士는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登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은 그 登錄事實을 國家技術資格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技術士 관련 主務部長官(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技術士는 2 이상의 技術士事務所를 開設할 수 있다.(※ 要參照別添 표-2)
- ④ 技術士事務所의 登錄基準·登錄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解說〉 母法이 制定公布된 然後에 施行令草案 立法上 技術士會員의 最大關心事로서 論難이 甲論乙駁될 素地가 가장 甚한 對象이 이法 第6條가 될 것으로 豫想된다. 즉, ③과 ④項에 관한 施行令草案을 指摘하는 것일 것이다.

例컨대 專門技術士資格과 土木施工 技術士資格은 二重 或은 그 以上일 경우에 兼職이 될 수 없는 것은 當然한 일이지만 이것만 指摘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法條文解釋上 問題點을 提起하지 않은가 걱정이 된다.

會員各者가 至大한 關心條項이므로 各者의 意見을 充分히 反映하여 法條文化 되도록 提示하기 바란다.

第 7 條 (登錄拒否)

科學技術處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申請하는 技術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

1. 登錄申請書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士事務所의 登錄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된 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3.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第 8 條 (登錄事項의 變更申告)

- ①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技術士(이하 “事務所登錄技術士”라 한다)가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② 第6條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 9 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事務所登錄技術士가 아닌 者는 技術士事務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解說〉 第7, 8條는 解說이 不必要한 것이고, 第

9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에 관해서는 施行令과 施行細則에서 明確한 法條文化하여 國家技術資格法 第5條(類似檢定の 禁止)와 같은 前轍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며, 違反時에는 第19條 罰則에 근거하여 300萬원 以下の 罰金刑이 賦課·徵收되는 條項이다.

第 10 條 (서명날인)

- ① 事務所登錄技術士가 職務遂行과 관련하여 書類 또는 設計圖書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書類 또는 設計圖書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書類 및 設計圖書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事務所登錄技術士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서명날인할 때에는 國家技術資格法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技術分野 및 資格種目を 명시하여야 한다.

〈解説〉 舊技術士法, 技術用役育成法等에는 이러한 條項이 없고, 다만 技術用役育成法 施行令 第11條(報告書 등에의 署名)에 明示되어 있다.

第 11 條 (登錄取消)

科學技術處長官은 事務所登錄技術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技術士事務所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 1.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로서 主務部長官의 登錄取消 요청이 있을 때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받은 때
- 3. 第6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될 때, 다만 1月이내에 그 登錄基準을 갖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命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第 12 條 (技術士의 管理에 관한 協議)

科學技術處長官은 技術士管理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 1. 技術士事務所의 登錄 및 管理에 관한 重要사항
- 2. 技術士의 育成 및 活用に 관한 사항
- 3. 기타 技術士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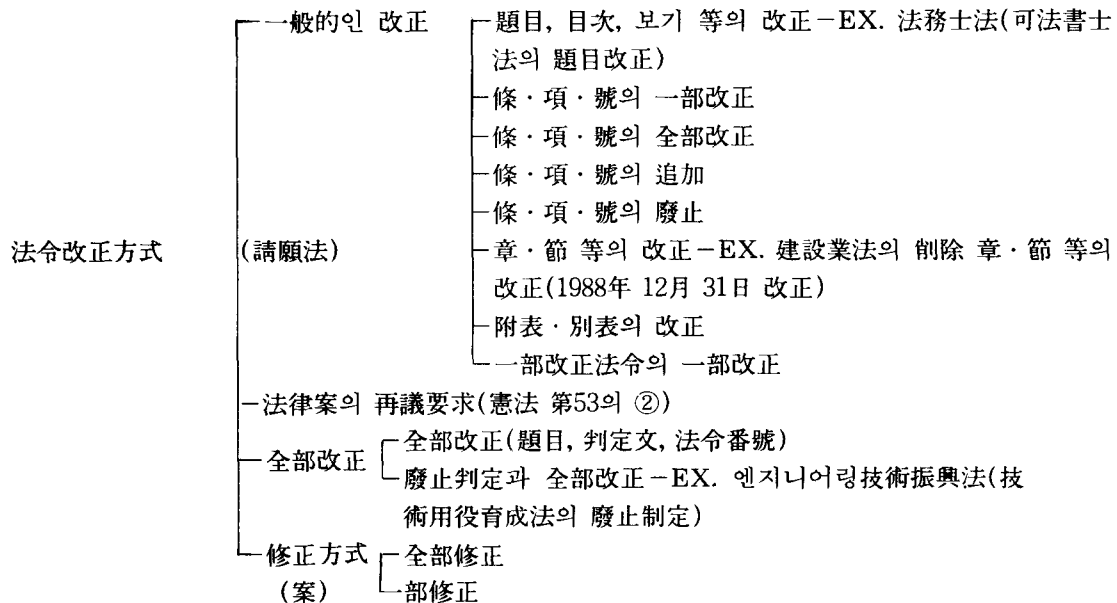


그림 2 法令改正形式圖(SGK)

사항

〈解説〉 科技處案과 많이 달라진 法條項이 이 條項이며, 技術士管理委員會設置가 完全히 削除되고 科技處와 主務部長官과 技術士에 關한 事項을 協議만 하게 되어 있다. 舊技術士法 第5章에 技術士管理委員會에 關한 條項이 있었고, 日本 技術士法(1983年 第3次 改正分) 第5章(第48條~第53條) 技術士審議會가 있는데 왜 이렇게 法制處가 格下縮小시켰는지 理解가 淺가는 條項으로 變色하였다. 이 法案이 國會通過后 制定公布되어 施行될 때 어느만큼의 時日이 經過되면은 그 必要性이 再擡頭할 것으로 豫想되므로 이 部分의 改正案은 別添된 그림-2을 參考하여 다시 試圖할 일로 되어 버렸다.

第 13 條 (韓國技術士會의 設立)

- ① 技術士는 그 職務의 개선, 技術能力의 향상 및 品位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科學 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技術士會(이하 “技術士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 ② 技術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 ③ 技術士會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④ 技術士會의 定款에 기재할 사항은 大統領 令으로 定한다.
- ⑤ 技術士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解説〉 1963年 11月 11日, 法 第1442號도 制定 公布된 技術士法에 의거하여 設立된 (社) 技術士會는 이 法이 法律 第2994號 技術士法廢止法律(1976. 12. 31)에 의하여 廢止됨에 따라 民法 第32條의 規程에 의하여 科學技術處 第49號로 1977年 9月 6日에 法人設立認可를 받는 데 이어서, 1986年 5月 15日 또다시 認可番號 第11號도 許可狀을 받는 受侮를 겪었다. 즉, 母法이 廢止되면서 只수도

地球周圍를 돌고 있는 宇宙船의 迷兒처럼 孤兒身勢로 轉落하게 된 것이다.

技術士法의 再立法復活로 社團法人設立 근거를 비로서 갖게 된다. 其間의 설음도 이 法이 制定公布로서 말끔히 씻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國家技術資格法制定立法時의 實務者의 過失로서 同法속에 法人設立根據를 條文化해야 한다는 立法理論의 未洽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第 14 條 (技術士會의 業務)

技術士會가 행하는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 1. 技術向上에 關한 調查·研究
- 2. 産業技術指導 및 情報交換
- 3. 技術士의 職務開發과 能力向上
- 4. 技術士의 品位保全
- 5. 技術士의 福祉增進 및 權益擁護
- 6. 主務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
- 7. 기타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로서 定款이 定하는 業務

〈解説〉• 舊技術士法에는 技術士會의 業務條項이 없었다.

- 最新日本技術士法 第55條에 위 條項에 該當하는 部分文章이 있다.
- 技術士會가 이 法을 根據로 ① 技術士管理協議機構(第2條) ② 技術仲裁機構(第3條와 第5條) ③ 技術情報센터(第3條, 第5條, 第14條) ④ 技術士信用庫 等 設立할 수가 있다.(第3條, 第5條, 第14條)
- 技術士會의 設立에 母法을 根據로 그 業務가 飛躍的으로 啓發促進되는 法的 基盤위에서 各方面으로 發展하게 될 것이다.
- 尙后 技術士會員을 위한 福祉增進事業이 金融上으로 啓發促進될 것이다.

第 15 條 (技術士會의 監督)

- ① 科學技術處長官은 技術士會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② 科學技術處長官은 技術士會에 대하여 組織運營 및 業務에 關하여 필



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第 16 條 (보고·檢査 등)

① 科學技術處長官은 事務所登錄技術士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 17 條 (聽 聞)

科學技術處長官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士事務所의 登錄取消處分을 하고자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解説> 新設條項으로서 民主化傾向으로 가는 立法趣旨이다.

<事例> 建築士法 第28條 ②項(1984. 12. 31. 本條改正)에도 聽聞할 機會를 준다.

第 18 條 (權限의 委託)

이 法에 의한 科學技術處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技術士會에 委託할 수 있다.

第 19 條 (罰 則)

①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받은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技術士事務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 20 條 (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登錄된 技術分野 또는 資格種目を 명시하지 아니한 事務所登錄技術士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事務所登錄技術士

4.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檢査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事務所登錄技術士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解説> 新設條項으로서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明文化되어 있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短縮되거나 公布日施行토록 하는 方案이 있다.)

第 2 條 (韓國技術士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民法 제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韓國技術士會(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그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韓國技術士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韓國技術士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 중 法人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韓國技術士會가 承繼한다.

(\* 經過措置에 빠진 것이 數件이 있으므로 追加插入로 록 하여야 한다.)

### 3. 이 法施行令草案作成을 위한 設問調查

#### 3. 1. 設問調查의 目的

92. 7月初 法制處에서 國會로 立法案上程키로 위해 提出된 技術士法案(政府最終案)은 全文20條와 附則2條도 構成된 것이고, 이것을 根據로 한 이 法施行令案(附資料-1) 作成上的 各條項名稱 리스트를 갖고 各會員께서 構想하고 있는 必要하고도 充分한 法條文化에 反映되어야 할 事項을 具體化하기 위한 意見 및 資料等 其他關聯事項의 設問資料蒐集을 통해서 衆智를 集大成하여 技術士의 職務遂行과 그 管理事項全般과 技術士活用の 義務 勸獎條文化를 期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것은 過去에 試圖된 바 없는 民主的輿論化를 促進하여 母法이 되는 技術士法案의 國會審議에도 反映될 輿論의 收斂에도 一助가 될 것이고, 立法上的 未備·未洽·脫憲 或은 違憲條項이 없도록 慎重을 期하고자 하는데서 立法草案者의 한 苦心의 發露인 것이다.

※ 當會作成試案은 대강 條文化되어 있으나, 設問調查(2회에 걸친)를 걸쳐서 再次修正 補完后, 政策審議가 끝나면 適切한 時期에 科技處에 提出할 草案을 公開코져 한다.

#### 3. 2. 設問調查委領

• 設問調查內容을 會誌에 記載하고 그 答을 葉

書(番號識別集計方式)로 回信받거나 分量이 많을 경우에는 書翰式은 FAX로 回信받도록 한다.

• 設問調查要領은 세가지 方法을 擇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A) 設問에 依한 O·X型의 單答方式(技術士會가 提供하는 回信用郵便葉書에 記載后 當會에 回送한다)

(B) 設問에 依한 主要한 條項의 條文化案을 條項別 單文回答方式으로 當會에 書翰 或은 FAX로 回信을 한다.

(C) 施行令草案의 全條文中 主要한 條項을 敘述型方式으로 當會에 書翰 或은 FAX로 回信을 한다.

#### 設問調查(第2次)

##### A. 法規關聯事項

A. 1) 國家技術資格法 『第1條[目的] 이 法은 技術資格에 관한 基準과 名稱을 統一하여 適正한 資格制度를 確立하고……』되어 있는데 對하여 다음 問答에 答하여 주시오.

가. 이 法 第1條의 目的을 期間(20년이 經過한 오늘) 達成 하였으므로 法壽命이 다 되어 廢止고 代替되는 新法이 必要하다.  
Yes \_\_\_\_\_ No \_\_\_\_\_

A. 2) 이 法 施行令 各條項名稱과 一部條項內容을 보고, 母法에 根據한 施行令條文化가 未洽한 點 或은 新設補完條項이 있는지 또는 立法上 矛盾點이 있는지 그 與否를 알고져 한다.

다음 問答에 答하여 주시오.

가. 未洽不滿이다. Yes \_\_\_\_\_ No \_\_\_\_\_

나. 잘 모르겠다. Yes \_\_\_\_\_ No \_\_\_\_\_

다. 指摘事項 있다. 例示 : \_\_\_\_\_

A. 3) 이 法案 第3條(技術士職務)와 第5條(技術士 活用施策 등)를 根據로 施行令條文化에 必要한 것을 指摘하시기 바란다.

가. 技術士活用條文案明示해야 한다.

Yes \_\_\_\_\_ No \_\_\_\_\_

나. 技術士의 自律育成

- Yes \_\_\_\_\_ No \_\_\_\_\_
- 다. 技術士職務의 改善
- Yes \_\_\_\_\_ No \_\_\_\_\_
- 라. 技術士 需給計劃의 條文化 必要性與否
- Yes \_\_\_\_\_ No \_\_\_\_\_
- A. 4) 國家技術資格法(이 法)에는 “高級技術者”라는 말이 없다. 그런데 實地로 政府가 계속해서 쓰고 있다.(違憲인데도 不拘하고)
- 가. 非法定用語이므로 쓸수가 없다.
- Yes \_\_\_\_\_ No \_\_\_\_\_
- 나. 따라서 違法時 이 法에 의한 處罰對象에서 除外될 수 있다.
- Yes \_\_\_\_\_ No \_\_\_\_\_
- 다. 이 法 第5條(類似檢定の 禁止)을 適用하여야 한다.
- Yes \_\_\_\_\_ No \_\_\_\_\_
- 라. 指摘事項 : \_\_\_\_\_
- A. 5) 母法 第6條의 第3項 “技術士는 2 以上の 事務所를 開設할 수 없다.”(別添 표-2 參照) 이 法條文을 보고 施行令에 어떻게 法條文化할 것인지 다음 問答에 그 可否를 쓰시오.
- 가. 兼職禁止를 意味한다.
- Yes \_\_\_\_\_ No \_\_\_\_\_
- 나. 專門技術士와 施工技術士, 或은 其他二重資格을 갖고 2個 以上 業體에 登錄한 경우를 말한다.
- Yes \_\_\_\_\_ No \_\_\_\_\_
- 다. 專攻分野가 다른 2個 以上の 技術士가 合同技術士事務所로 1個의 事務所를 開設할 수 있다.
- Yes \_\_\_\_\_ No \_\_\_\_\_
- 라. 個人 및 合同技術士事務所 或은 受注業務遂行上 必要時 一個의 聯合體를 構成할 수 있다.
- Yes \_\_\_\_\_ No \_\_\_\_\_
- 마. 事務所運營上 必要時 法人化 或은 合作行爲를 할 경우 民法 第31條에 依據한 法人化 및 商法(第169條~第177條)에 該當

하는 경우도 妥當하게 事業推進이 될 수 있다.

Yes \_\_\_\_\_ No \_\_\_\_\_

- A. 6) 母法 第9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에 의거하여 技術士事務所와 類似한 名稱의 事例를 具體的으로 施行細則에서 明示하여야 한다.

Yes \_\_\_\_\_ No \_\_\_\_\_

A. 7)

- 가. 技術士職務 遂行上 必要한 標準約款에는 技術士의 責任保證保險, 仲裁條項 같은 것이 包含되는 것이 先進國의 慣行이다.

Yes \_\_\_\_\_ No \_\_\_\_\_

- 나. 따라서 立法豫告에 있었던 技術士共濟組合條項이 削除 되었으므로 그 代身에 會員共同出資에 依한 相互信用金庫法을 適用한 技術士信用金庫設立이 切實하다.

Yes \_\_\_\_\_ No \_\_\_\_\_

- 다. 技術士의 資格은 國家技術資格法에 依한 法定資格保證이 되어 있으나 이에 比例한 技術士職務遂行上 信用保證을 加入會員에 限해서만 施行하는 制度가 先進國의 慣行대로 새로 導入되어야 한다.

Yes \_\_\_\_\_ No \_\_\_\_\_

- 라. 技術士職務遂行을 위한 標準約款에는 各項에서 指摘한 以外の 必要條項이 있으면 다음 欄에 簡略하게 적어주시기를 바란다.

指摘事項 : (1)

(2)

- A. 8) 先進國의 Professional Engineer라 함은 法的受任關係業務를 爲始하여 訴訟代理人(Agent), 仲裁人(Arbitrator)等까지 하는 技術者(Engineer)를 말하는데 다음 問答에 答하여주시시오.(現在까지 誤認되고 있는 實情이다)

- 가. 日本의 技術士를 “kijitsushi(きじつし)”로 呼稱하되 先進國의 P.E.와 區別하고 있는 點을 妥當하다고 보는가?

Yes \_\_\_\_\_ No \_\_\_\_\_

나. 韓國의 技術士를 Professional Engineer\*로 英譯할 때 法規上으로 妥當한 翻譯이 아닐 것이다.

Yes \_\_\_\_\_ No \_\_\_\_\_

다. 이미 公開된 技術士法案에는 題目的 法條項이 內包되어 있다고 보는가?

Yes \_\_\_\_\_ No \_\_\_\_\_

\* 英國에서는 P.E. 代身에 Chartered Engineer(C.E)라고 한다.

參照事項: 技術士會誌(1992. 6. Vol. 25 No. 3)의 記事 “技術士란 무엇인가” p.p 20과 24~要參照

B. 技術士職務遂行關聯事項

B. 1) 技術士職務 遂行上 發生한 紛爭 技術的 事項에 限하여) 發生時 解決方法으로는?

가. 잘 모르고 妥當히 對處한다.

Yes \_\_\_\_\_ No \_\_\_\_\_

나. 民事調停法에 따른다.

Yes \_\_\_\_\_ No \_\_\_\_\_

다. 司法 3審制度에 따른다.

Yes \_\_\_\_\_ No \_\_\_\_\_

라. 商事仲裁 以外の(言論仲裁·環境汚染紛爭) 紛爭解決에는 斡旋·調停·仲裁를 거치고 있는 現行 實定法이 있음을 알고 있는가?

Yes \_\_\_\_\_ No \_\_\_\_\_

B. 2) 技術士業務 遂行上 必要的 信用保證·信用貸付·融資 等은 現在 어떻게 解決하고 있습니까?

가. 高利債(私債)를 쓰는 境遇가 있다.

Yes \_\_\_\_\_ No \_\_\_\_\_

나. 擔保融資(會社 或은 個人財産)를 利用한다.

Yes \_\_\_\_\_ No \_\_\_\_\_

다. 政府 或은 公共機關과 契約締結時 債權讓渡(對銀行)로서 先貸付 後還拂하고 있다.

Yes \_\_\_\_\_ No \_\_\_\_\_

라. 政府發注技術用役受注時 政府의 先收金으로 充當하고 中間既成拂로 一部를 解決하고 있다.

Yes \_\_\_\_\_ No \_\_\_\_\_

※ 日本 技術士協同組合이 있다.

B. 3) 技術士를 業體가 一時 雇傭하거나 或은 技術士 自身이 被雇傭時 長期間(例컨데 2年 以上) 就業하면서 相互間에 紳士協定으로 現在까지 雇傭契約書를 作成한 바는 없으나 民主化社會具現을 爲하여 契約締結 및 遵守·和解를 爲한 紛爭解決·俸給(或은 勤務手當)의 履行支給保證이 必要하게 되었다.(技術士會의 倫理要綱 實踐上)

가. 紳士協定으로 充分하다.

Yes \_\_\_\_\_ No \_\_\_\_\_

나. 技術士 雇傭標準約款으로 相互 牽制할 必要性이 있다.

Yes \_\_\_\_\_ No \_\_\_\_\_

다. 紛爭發生時를 對備하여 仲裁條項을 雇傭契約書에 義務條項으로 條文化하여야 한다.

Yes \_\_\_\_\_ No \_\_\_\_\_

라. 業體去來銀行의 支給保證이 就業期間中 必要하다.

Yes \_\_\_\_\_ No \_\_\_\_\_

※ 民法 第731條[和解의 意義] 和解는 當事者가 相互讓步하여 當事者間의 紛爭을 終止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